

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
(안상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	8108
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8. 1. 21.

발 의 자 : 안상수 · 강길부 · 고경화
 고조흥 · 고진화 · 고희선
 고흥길 · 공성진 · 권경석
 권영세 · 권오을 · 권철현
 김광원 · 김기춘 · 김기현
 김덕룡 · 김명주 · 김무성
 김석준 · 김성조 · 김애실
 김양수 · 김영덕 · 김영선
 김영숙 · 김용갑 · 김재경
 김재원 · 김정권 · 김정훈
 김충환 · 김태환 · 김학송
 김학원 · 김형오 · 김희정
 나경원 · 남경필 · 맹형규
 문 희 · 박계동 · 박근혜
 박성범 · 박세환 · 박순자
 박승환 · 박재완 · 박종근
 박 진 · 박찬숙 · 박형준
 박희태 · 배일도 · 서병수
 서상기 · 송영선 · 신상진
 심재엽 · 심재철 · 안경률
 안명옥 · 강재섭 · 안택수
 안홍준 · 엄호성 · 원희룡
 유기준 · 유승민 · 유정복
 윤건영 · 윤두환 · 이강두

이경재 · 이계경 · 이계진
이군현 · 이규택 · 이명규
이방호 · 이병석 · 이상득
이상배 · 이성구 · 이성권
이원복 · 이윤성 · 이인기
이재오 · 이재웅 · 이재창
이종구 · 이주영 · 이주호
이진구 · 이한구 · 이해봉
이혜훈 · 임인배 · 임태희
임해규 · 장윤석 · 전여옥
전재희 · 정갑윤 · 정두언
정몽준 · 정문헌 · 정병국
정의화 · 정종복 · 정진석
정진섭 · 정형근 · 정화원
정희수 · 주성영 · 주호영
진수희 · 진 영 · 차명진
최경환 · 최구식 · 최병국
한선교 · 허 천 · 허태열
홍문표 · 홍준표 · 황우여
황진하의원(13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청년미취업자의 고용 확대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

법률 제 호

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0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및 전담행정조직 설치) 정부는 대통령소속하에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고, 청년미취업자 실업문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간 · 지역간 · 사업간 업무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하되, 특별위원회 및 전담행정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<삭 제>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청년실업대책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, 위원회 폐지에 따라 기구·인력 및 예산의 감소가 수반되므로 재정수반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임.

3. 미첨부 사유

청년실업대책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직·정원 및 예산의 감축이 예상됨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4. 작성자

국회 안상수 의원실 문정일 보좌관(연락처 788 - 2494)